

# 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보조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
전부개정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#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박형용 의원 등 6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19년 11월 28일
- 회부일자 : 2019년 11월 29일

3. 제안사유

- 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기기 지원 및 보조기기센터의 설치·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「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·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, 보조기기 지원 및 센터의 운영 등 관련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- 가. 보조기기 등 용어 정의(안 제2조).
- 나.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(안 제4조).
- 다. 충청북도 보조기기센터 설치·운영(안 제6조).
- 라. 충청북도 보조기기 센터 운영의 위탁(안 제7조).
- 바. 충청북도 보조기기센터의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지휘·감독(안 제8조).

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이강근)

가. 제출배경

- 본 조례안은 「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함)의 제정·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정한 내용을 반영하고 충청북도 보조기기센터의 운영 및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.

## 나. 주요내용 검토

- 조례 제명을 현행 ‘충청북도 보조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’에서 ‘충청북도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 조례’로 개정함.
- 안 제2조(정의)에는 “장애인등”, “보조기기”, “보조기기 서비스” 등 본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요용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규정함.
  - 현행 조례에서는 “보조기구”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, 법 제정에 따라 “보조기기”로 명칭이 변경된 바, 본 조례에서 이를 적용함.
  - 또한, 현행 조례에서는 지원대상을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제한하고 있지만, 법 제정에 따라 지원대상이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까지 확대된 바, 본 조례에서 이를 적용함.
- 안 제4조(보조기기 지원사업 등)에는 보조기기의 교부·대여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사업, 관련 정보 제공, 보조기기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지원 등 보조기기의 지원 및 활용 촉진을 위해 도에서 추진하는 보조기기 지원사업의 범위에 대해 규정함.
  - 이는 법 제7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할 수 있는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에 따른 규정임.
- 안 제5조(보조기기 이용자의 의견수렴)는 도지사가 보조기기의 구매, 대여 및 제작 등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이용자 의견 반영

의무를 규정한 것으로, 보조기기 이용자 의견 반영을 통해 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만족도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※ 충북('19) 잠재적 이용대상: 노인인구(261,763명), 장애인 인구(97,086명)

○ 안 제6조는 법 제14조에 따라 보조기기 관련 사업 수행을 위한 충청북도 보조기기센터의 설치·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.

- 충북에서는 2013년부터 (재)청주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에서 ‘충청북도 보조기기센터’를 위탁 운영하고 있음.

- 안 제6조 각 호에는 보조기기센터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, 특히, 보조기기 전시·체험장 운영 및 보조기기 대여 사업이 규정되어 있음.

- 조례에 규정된 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도차원의 예산 지원이 확보되어야 할 것임.

• 현재 도 보조기기센터에서는 총 130개의 보조기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중 50%(70여개) 이상의 기기가 내구연한(耐久年限)이 만료된 기기임. ※ 내구연한 만료 기기의 교체 예상 비용: 45,974,200원

• 또한, 매년 새롭게 출시되는 신규제품의 구입, 전시, 체험도 필요한데, 현재 보조기기센터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만으로는 이를 충당할 수 없음.

• 따라서 보조기기의 내구연한에 따른 교체 및 신규 출시 제품의 구입을 위한 보조금 지원을 통해 조례에 규정된 보조기기 전시·체험장 운영 및 보조기기 대여 사업이 도민을 위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.

○ 안 제7조는 보조기기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,

- 보조기기센터는 2013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장애인 광역보조기구센터 공모사업에 (재)청주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케이스인 바, 위탁 우선권을 부여하되, 다만,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18조 및 위탁기관의 개별사정에 따라 지속적인 위탁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,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센터를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

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- 안 제8조는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에 따라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보조기기센터를 지휘·감독하며,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센터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#### 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함)의 제정·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정한 내용을 반영하고 충청북도 보조기기센터의 운영 및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내용상 타당함.
- 또한, 법률의 범위에서 규정한 것으로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으며, 절차상으로도 관련 기관 간담회, 조례안 예고 및 집행부 협의를 거친 바 타당하다고 판단됨.

## <참고자료> 충청북도 보조기기센터 현황

### □ 센터개요 ('13. 5. 30. 개소)

- 사업량 : 1개소
- 기관명 : 충청북도보조기기센터 (센터장 이순희)
- 소재지 : 충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438번길 39-17 (충북재활원 내)
- 면적 : 462.81㎡ (140평)  
(사무실 및 전시·체험 공간, 평가실, 상담실, 수리·개조실 구성)
- 인력구성 : 6명

구분	계	센터장	팀장	사회복지사	보조공학사
인원	6	1	1	1	3
업무	-	· 사업총괄	· 사업전반진행 담당 및 조정, 인력관리	· 사례관리 · 회계, 총무 등	· 보조기구 서비스 및 개조제작 등

- 총사업비 : 314,816천원 (국비 50%, 도비 50%)
- 산출근거
  - 인건비 / 5명 (급여, 초과근무수당, 명절상여금) : 156,598천원
  - 물건비 (운영비, 여비, 업무추진비, 직무수행경비) : 46,652천원
  - 자산취득비 (자산취득비) : 111,566천원

### □ 주요기능

- 상담 및 평가 : 특성에 맞는 상담, 분석, 전문 정보제공 및 서비스
- 적용 및 훈련 : 개조 및 제작, 구매전 체험, 단기임대와 사용설명 교육
- 사후관리
  - 성장기 장애 아동·청소년을 위한 보조기기 수리
  - 파손, 노후화로 인한 보수 및 수리·세척 (소모품 교체 등 A/S)
- 정보제공
  - 콜센터 운영 : 전화상담을 위한 정보제공
  - 견학 프로그램 : 전시장 및 체험실 운영
  - 홍보 : 찾아가는 전시회, 리플릿 제작, 언론매체 활용 등
  - 전문인력교육 : 세미나, 학술대회, 관리자지원 교육 등

□ 추진실적

사업구분		세부사업		실적	
				2019상반기	2020
필수 사업	장애인 보조기구 서비스	상담 및 평가	욕구분석(상담)	735명	명
			평가		
		적용 및 훈련	정보제공		
			구매 전 체험 (단기대여)		
			교육 및 훈련		
			개조 및 제작		
		재원확보	자부담		
			센터지원		
			무료교부사업		
			보장구 건강보험		
			보장구 의료급여		
			복지용구 노인장기요양		
			정보통신기기		
			보조공학기기		
			재활보조기기		
			보철구지급		
			타부처 기타		
			민간		
		사후관리	보조기구 수리		
	장애인보조기구 소독·세척				
	사후평가/서비스관리				
	정보제공	콜센터운영		397건	건
		견학프로그램운영		15건	건
		전문인력교육		14건	건
		홍보		24건	건
	지역사회연계 및 민간자원 발굴	지역사회연계		5건	건
민간재원(공적급여) 발굴		4건	건		

## <서비스 영역별 보조기구 예시>

서비스 영역	보조기구	서비스 영역	보조기구
감각보조기구	 [시각-복합용독서판대기]  [시각-휴대용판대기]  [시각-현소네]	자동차개조	 운전-핸드컨트롤러  운전-엑셀 페달  운전-휠류보조손잡이
	 [청각-골드헤드셋]  [청각-진동알람시계]  [청각-종축장치]		 합승-휠체어리프트  합승-슬라이드업시트  합승-이동경사로
앉기 및 자세	 엎기 관련 보조기구  서기 관련 보조기구  좌식 엎기 보조기구	컴퓨터 접근	 [키보드-미투키보드]  [마우스-포우스]  [스위치-무선스위치]
	 벨트류  립체어 액세서리  조절가능 작업테이블		 [키보드-입력보조도구]  [마우스-스피로니브]  [스위치-볼로봇기]
휠체어 및 이동기기	 [수동휠체어]  [전동휠체어]  [스쿠터]	보완대체의사소통	 [고루크]  [다이나믹스]  [오케이톡톡]
	 [보행보조차]  [스포츠형 휠체어]  [기립형 휠체어]		 [유비큐]  [리플렉]  [빅빅]
일상생활 보조기구	 식사-미끄럼방지접시  목욕-목욕용 의자  이동-편안부착이동판	주택 및 환경개조	 [휠 발힘대]  [마운팅 시스템]  [육상인식환경조정장치]
	 학발과-인추자유는도구  목욕-치약계  감손사용지용 손톱깎이판		 [정사포]  [워크스테이션]  [침대형 마운팅 시스템]